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56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한민수 · 박해철

황명선 · 윤준병 · 박 정

이수진 · 김남희 · 홍기원

한정애 • 이병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, 교육, 취업, 주거,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,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4조의

5).

법률 제 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5(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에게 요청할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5(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)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에
	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	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 민 이해증진 교육이 「초·중
	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 록 국가교육위원회 및 특별시
	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"교육 감"이라 한다)에게 요청할 수
	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 위원회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 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 육을 반영하여야 한다.